

국회에서 의결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추미애
법무부장관	
국무위원	서욱
국방부장관	

●법률 제17823호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를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5·18민주화운동”이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반인도적 범죄”란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국가 또는 단체·기관(이에 속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민간인에 대한 살해, 상해, 감금, 고문, 강간, 강제추행, 폭행을 말한다.

제2조 중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를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 ② 제1항의 행위가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대표적인 민주화운동이자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슬픈 역사임.

그러나 4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5·18민주화운동을 비방하고, 폄훼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날조함으로써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이 있음.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왜곡은 희생자와 유족 등에게 단순히 모욕감을 주거나 그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인식 전파와 국론 분열이라는 더 큰 사회적 과장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일반 법률보다 더욱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의 목적과 5·18민주화운동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 정지를 명시하며,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국론 분열을 방지하고 5·18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의 역사로 올바르게 자리매김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 세 균

국무위원

추 미 애

법무부장관

●**법률 제17824호**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검찰청”을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청구하는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또는 그 지청(支廳)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支院)의 판사에게 하여야 한다”를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또는 그 지청(支廳)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支院)의 판사에게 하여야 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의 경우에는 그에 대응하는 법원의 판사에게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지방검찰청 또는 그 지청”을 “지방검찰청이나 그 지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한다.

제44조제3항 후단 중 “검찰청”을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의 절차 관련 규정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